

2019학년도

중등 사사과정 과학영재 선발

[현재 중등 기초사사과정 수료예정자 중
인천시 소재 학교 재학생 대상]

모 집 요 강



(공고일: 2018. 10. 22)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Incheon Science Elite Program

전화 : 032) 835-4971 FAX : 032) 835-4976

2019학년도 중등 사사과정 과학영재 선발

(현재 중등 기초사사과정 수료예정자 중 인천소재 학교 재학생 대상)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과학영재를 발굴하여 교육하고자 2019학년도 중등 “사사과정” 교육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인원

분야	융합
프로젝트 팀수	9개
모집인원	45명 내외(팀별 3명 이상)

2. 지원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각 프로젝트의 주제와 개요를 확인하고 원서 접수 때 전공과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 최종 합격하더라도 2018학년도 기초사사과정 교육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의 평가 성적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평가 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접수는 해당 일, 해당시간 외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허위임이 드러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선발기간 중 합격자 발표 등 공지사항은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본 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isepclub.com>)에 공고하므로 수험생들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이익은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교육원 선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3.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

가. 지원 자격

2018학년도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중등 기초사사과정 수료예정자

나.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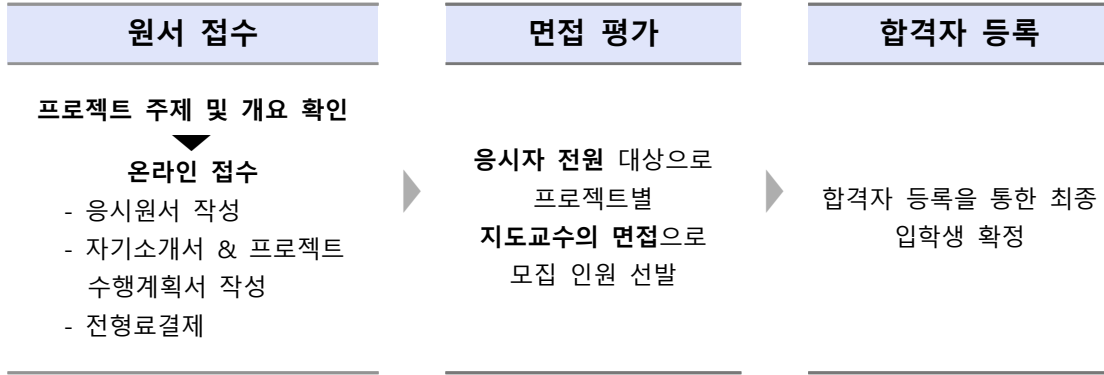
제출자	제출 서류	대상자		접수 방법		유의 사항
		공동	해당자	홈페이지 입력	우편	
지원자	응시원서	○		○		※ 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3×4)사진 파일 첨부
	자기소개서 &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		○		※ 각 문항별 제공된 분량에 따라 작성 등록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		※ '양식다운받기'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학생, 보호자 모두 서명 후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이미지 파일 첨부
	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 【별표 1】 참조		○		○	※ 해당 자격에 대한 서류 모두 제출 ※ 서류 미비할 경우 응시 제외 ※ 제출 서류 검토 후 응시 최종 확정

4. 선발 일정

내용	일정	시간	장소	비고
서류 양식 공개	2018. 10. 22(월)	17:00~	http://www.iseclub.com	
프로젝트 주제 공개	2018. 10. 30(화)	17:00~	http://www.iseclub.com	
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2018. 11. 2(금) ~11. 9(금)	11. 2(금) 10:00~ 11. 9(금) 18:00	http://www.iseclub.com	※ 학생사진 이미지 등록 (129×167 픽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명 한 것 등록
면접	2018. 11. 17(토)	13:00~	추후 공지	※ 고사장 공고일 11. 14 (수) 17:00
합격자 발표	2018. 11. 28(수)	17:00~	http://www.iseclub.com	※ 홈페이지 확인 ※ 전화 문의 불가
합격자 등록	2018. 11. 29(목) ~11. 30(금)	-	합격자 제출서류 우편 접수	※ 등기 우편으로 발송 ※ 11. 30 소인까지 인정

※ 상기 일정은 대학 일정과 중복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홈페이지에 공지

5. 선발 진행 과정



6. 원서 접수

※ 원서 접수는 방문 접수 없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가. 온라인 접수

- 접수 사이트: <http://www.isepclub.com> > 중등선발바로가기 > 중등사사선발
- 접수기간: 2018년 11월 2일(금) 10:00 ~ 11월 9일(금) 18:00
 - ※ 응시자는 프로젝트의 주제와 개요를 확인 후 **프로젝트를 선택**
 - ※ 1지망, 2지망은 **다른 프로젝트로 선택**
 - ※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수험표 출력 가능
- 등록 내용: 제출 서류 목록 및 양식 참조
 - 양식 다운받기 경로: <http://www.isepclub.com> > 중등선발 > 중등사사선발 > 양식다운받기
 - 이미지 파일 등록: 학생 사진,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는 우편 제출: **11월 9일(금)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증빙서류 접수 후 최종 접수 완료)
 - ※ 교육원 주소: (21999)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별관 B동 6층 601호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영재선발담당자 (봉투에 '2019학년도 사사 선발 서류 재중' 기재)

나. 전형료

전형료	납부대상	납부기간 및 방법
20,000원	응시자	11월 2일 10:00 ~ 11월 9일 18:00 ※ 온라인 접수 후 온라인 결제로 진행 ※ 삼성카드, 삼성페이 결제 불가

※ 사회통합대상자는 전형료 면제

다. 수험표 출력

- 서류접수 완료 후 선발메뉴 중 '**접수확인**'에서 수험표 출력 가능(컬러 출력)
 - ※ 수험표 컬러 출력이 어려운 경우 응시원서 작성 시 등록한 동일한 사진을 붙임
- 면접 당일 수험표 지참

7. 최종 선발방법

- 입학정원의 100%를 평가 점수 순으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지도 교수의 평가 점수를 우선하여 선발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그 결원은 차점자 순으로 충원
- ※ 응시자의 평가 성적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음

8. 합격자 등록

- 합격자 발표: 2018. 11. 28(수) 17시 이후
- **합격자 등록 기간: 2018. 11. 29(목) ~ 11. 30(금)**
- 합격자 등록방법: 우편으로 서류 제출
 - **11월 30일(수)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 교육원 주소: (21999)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별관 B동 6층 601호
 -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영재선발담당자 (봉투에 '2019학년도 사사 선발 서류 재중' 기재)
- 제출 서류: ① **개인정보동의서 1부(합격자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반명함판 사진(3×4) 2매**

9. 사사교육 운영 방침

- 1년 교육과정으로 진행
- 교수 및 영재교육전문가의 직접 교육
- 사사과정 운영 원칙
 - 각 프로젝트별 교육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 최종합격예정자가 2인 이하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폐강한다.
- 교육 시간은 각 팀별로 결정(**학기 중 주말, 평일 오후(저녁) 또는 방학 집중교육**)

【붙임 1】 사회통합대상자 범위 및 제출 서류(2019학년도)

1. 사회통합대상자 지원 자격

1) 기회균등대상자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u>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u>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u>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u> ①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한부모가정지원사업 ②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③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최근 9개월 (2018.1 ~ 2018.9)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아래 【2019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u>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u>
인천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장이 정하는 자	■ 차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최근 9개월 (2018.1 ~ 2018.9)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아래 【2019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2) 사회다양성대상자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 8분위를 초과하지 않는 자 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장이 정하는 자	■ 소득 8분위를 초과하지 않는 자 만 지원 가능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5)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6)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7)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인의 자녀

*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한 가지 조건의 증빙 서류만 제출할 것.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1) 2019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적용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2) 2019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적용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인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인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인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3)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8분위 적용 기준표

분위구분 (경계값)	월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8분위	6,213,497	195,224	217,535	198,78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1) 기회균등대상자 제출 서류

지원 자격	제출 서류(각 1부)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 (본 교육원 소정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 주민센터 발급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의 차상위계층 또는 차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전원) : 최근 2년 이내 발급 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양자전원) : 최근 9개월 (2018.1~2018.9)간의 고지금액이 표시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 보험료 합산금액으로 확인	

2) 사회다양성대상자 제출서류

지원 자격	제출 서류(각 1부)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 보훈지청 발급	※ 소득 8분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자격 없음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 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소득 8분위 확인) ·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 (본교 소정 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부양자 전원, 최근 2년 이내 발급 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양자 전원) : 최근 9개월 (2018.1 ~2018.9)간 고지 금액이 표시된 것
다문화가정의 자녀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 장관 발급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교육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관계확인서 :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입양된 자녀	· 입양관계 증명서	
순직공무원의 자녀	· 순직확인서	
장애인(1~3급)의 자녀	· 장애인 등록증 사본(1~3급)	

【붙임 1】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

1. 범위

가. 가구단위 보장(생계를 책임지는 학부모 기준)

- 1)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된 2촌 이내인 자(형제·자매 포함, 동거인 제외)
- 2) 건강보험증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별도인 65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3)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된 소득 증명이 가능한 외국인 배우자
- 4) 주소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단, 주소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월 소득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제외)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5,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선정

나. 가구구성에서 제외할 가구원

-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 받고 있는 자
- 2)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 90일 초과 체류자
- 3) 가출·행방불명 자

※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

2. 건강보험료 산정

가. 건강보험료 확인시 유의사항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2)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나. 처리 절차

- 1)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 2) 주민등록등본 기재 인원과 건강보험증 기재 인원 대조
- 3) 상이한 경우 별도의 소득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해당자의 건강보험증과 납부확인서 접수
- 4) 소득이 있는 자의 최근 9개월(2018.1 ~ 2018.9)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의 평균금액 합산 소득 8분위 초과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된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된 소득이 있는 자녀
- 5) 기회균등전형 지원자는 4)의 금액을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 적용한 기준에 따라 처리

다. 산정 및 적용 사례

- 1)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2)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예)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

3. 기타

가. 학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학부모 기준으로 가구 수 파악

나. 학부모가 이혼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상황을 기준으로 가구 수 파악

다. 건강보험료 최근 9개월(2018.1 ~ 2018.9)간 납부금액의 평균금액 적용 시, 학부모의 이혼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해당 월의 납부자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적용